



한국전자위임주식회사

T. 1833-3112

F. 031-994-3137

E. wiim@wiim.kr

W. www.wiim.kr

목차

- 1** 설립 이야기
- 2** 시스템 소개
- 3** 법적 근거
- 4** 기대 효과

* 부록 : 설립의 법적 근거



1 설립 이야기(현 상황과 대응 방안 및 한계점)

2021년 주주총회 주요 현안으로 조사

2021.03.08

첨부파일 (3월 8일자 조간) 2021년 주주총회 주요 현안으로 조사.pdf 담당부서 기업정책팀

<대한상의 조사>

보고서 쓰라, 개정상법 대응하라 ... 주총준비 기업들 고민 깊어

- 3월 주총 4대 애로 : ① 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의무 (59%) ② 코로나 방역의무 부담 (36%) ③ 의결정족수 부족 우려 (18%) ④ 상법개정에 따른 임원선임 부담(12%)
- 특히 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의무에 75%가 어려움 호소 : 조기확정 부담(67%), 정정공시 부담(51%)
- 기업 3곳 중 1곳(36%) 개정상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부담 ... 긍정적 평가는 4%에 그쳐



※ 전자위임장 수여 실적 포함, 총 발행주식 수 기준) 행사를 추이

• 상황

주주 소집이 쉽지 않은 현 상황 때문에 기업들이 주주총회 준비에 많은 어려움 겪고 있음

- ✓ 코로나 방역 의무 부담
- ✓ 의결정족수 부족 우려 등

• 환경

국내에는 완전한 온라인 주주총회 불가능. 따라서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주주총회 개최하는 추세

[근거] 상법 제364조(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 대응 방안 및 한계점

주로 아래의 방법들을 이용하여 주주총회를 진행하지만, 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 ✓ 전자투표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한국전자위임주식회사

• 전자투표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나 각 증권사들의 온라인 주주총회장에서 안건에 대한 투표 가능

✓ 주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장치는 없음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주로 관련 업체들과 계약하여 인력 고용 후 전국에 널리 거주하고 있는 주주들의 자택 직접 방문

✓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 자택 방문 시 신분증 복사 등이 이루어지지만, 직접적인 본인 확인 불가능으로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음

• 스마트 전자위임 시스템

이전엔 없었던 독보적인 전자위임 시스템 구축하여 성공적인 주주총회 유도 및 주주 관리 가능

✓ 합리적인 비용과 적은 시간 소요(안건 통과를 위해 필요한 지분에 대해서만 위임 권유 진행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막음)

✓ 주주들이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위임에 참여 가능

✓ 위임 완료 주주들에게 선물(약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또는 기프트콘)지급으로 주주들의 참여 이끌어낼 수 있음





• 실무 절차

- ✓ 의결권 위임 계획 수립
- ✓ 스마트 전자 위임 시스템 사용 계약
- ✓ 회사 홈페이지에 위임장 양식 게시 (공개)
- ✓ 주주들에게 시스템 안내 및 위임 실시
- ✓ 위임 결과 집계 및 위임 권리행사

• 참고할 사항

- ✓ 권리 수임자 사전 결정
 - 주주권리 위임 받을 수임자 사전에 지정
(복수 지명 가능하며 수임자로 법인보다는 자연인이 좋음)
- ✓ 주주들이 위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사용 계약일이 빠를수록 더 많은 위임 가능
 - 주주총회 前 9일의 시간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계약 수락 불가능할 수 있음
- ✓ 위임 결과 집계 시 다음의 자료 제공
 - 위임 내역 집계(총 위임 인원수/비율 및 의안별 찬반 인원수/비율 표시)
 - 각 주주별 위임장 원본(복사방지 용지 인쇄)



시스템 소개(모바일 위임 시스템 안내)

메인 화면

스마트(주)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페이지는 **2021.03.24** 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한 위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페이지입니다.

아래의 단계에 따라 위임절차가 완료되면
주주총회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택하신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택1)

해피머니 온라인상품권	GS칼텍스/GS25...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신세계상품권 모바일교환권

확 인

한국전자위임주식회사 콜센터 : 1661-1811

- 주주총회 위임 안내
- 선물 선택 및 지급 절차 안내

STEP1. 주주확인

STEP.1 주주확인 STEP.2 주총 의안 안내 STEP.3 본인 인증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휴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남자 ☐ 여자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자세히 보기](#) ▼

확 인

한국전자위임주식회사 콜센터 : 1661-1811

- 권리 주주 본인 확인

STEP.1 주주확인 STEP.2 주총 의안 안내 STEP.3 본인 인증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휴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남자 ☐ 여자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닫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스마트 주주동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스티커는 개이저보

확 인

한국전자위임주식회사 콜센터 : 1661-1811

- 권리 주주 개인정보 활용 동의



STEP2. 주총 의안 안내

STEP.1 주주확인	STEP.2 주총 의안 안내	STEP.3 본인 인증
의안번호 : 1 의안제목 :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간략설명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자세히보기	의안번호 : 123468796 의안제목 : 제목이 들어갑니다. 간략설명 : 간략설명입니다. 간략설명입니다. 자세히 보기	
의안번호 : 2 의안제목 : 이사 선임의 건 간략설명 : 이사 선임의 건 자세히보기	의안번호 : 123468796 의안제목 : 제목이 들어갑니다. 간략설명 : 간략설명입니다. 간략설명입니다. 간략설명입니다. 주총 의안 상세 설명이 모두 들어갑니다. 주총 의안 상세 설명이 모두 노출. 주총 의안 상세 설명이 모두 들어갑니다. 주총 의안 상세 설명이 모두 노출. 주총 의안 상세 설명이 모두 들어갑니다. 주총 의안 상세 설명이 모두 노출. 주총 의안 상세 설명이 모두 들어갑니다. 주총 의안 상세 설명이 모두 노출. 주총 의안 상세 설명이 모두 들어갑니다. ☒ 찬성 ☐ 반대 자세히 보기	
의안번호 : 3 의안제목 : 감사 선임의 건 간략설명 : 감사 선임의 건 자세히보기	의안번호 : 123468796 의안제목 : 제목이 들어갑니다. 간략설명 : 간략설명입니다. 간략설명입니다. 간략설명입니다. 자세히 보기	
주주총회시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또는 수정안 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 위임함 ☐ 위임하지 않음		
위임 확인		
한국전자위임주식회사 콜센터 : 1661-1811		

STEP3. 본인 인증

STEP.1 주주확인	STEP.2 주총 의안 안내	STEP.3 본인 인증
		통신사 인증 카카오 인증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동의절차가 완료됩니다.		
본인 인증		
한국전자위임주식회사 콜센터 : 1661-1811		

- 각 의안별 찬성/반대 선택 가능
- 사전에 부의 되지 않은 의안에 대한 의결도 위임 가능

- 전자서명법 발효로 인해
본인인증으로 전자서명 가능



시스템 소개(모바일 위임 시스템 안내 / 계속)

위임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및 동 시행령 제163조에 준하여, 아래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을 피위임인에게 정히 위임합니다.

1. 주주총회 관련사항

회사명	일자	시간	장소
삼성전자 주식회사	2021-03-26	10:30	삼성전자 기종공장

2. 의결권 피권유자(위임인) 관련사항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의결권 있는 보유주식 수	주식의 종류	위임하는 주식의 수
홍길동	123456-1*****	1,234,567주	보통주	1,234,567주

3. 의결권 권유자(피위임인) 관련사항

성명	위임 전 보유주식 수	특별관계자 보유주식 수	회사와의 관계	피위임인의 대리인 유무
강감찬	10주	없음	없음	없음

4. 주주총회 목적사항

번호	의안	찬성	반대
1	2020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안	●	
2	이사선임의 안	●	
3	감사선임의 안		●
4	임원보수한도 승인의 안	●	
5			
6			
7			
8			
9			

5. 주주총회시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또는 수정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함 (●) 위임하지 않음 ()

위임일시 2021년 03월 02일 21시 08분 30초

위임인 홍길동 (전자서명) 인증기관 나이스평가정보

본 위임장은 전자위임전문 인터넷 페이지 www.wiim.kr를 이용하여 상기 위임인 본인이 전자서명함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본 위임장은 제발급되지 아니하며, 복사본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발급일시 2021/03/18 10:24

한국전자위임주식회사

• 위임장 예시

- ✓ 제반 법령을 모두 감안하여 구성
- ✓ 회사별 특수성에 따라 양식은 변경 가능
(법률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은 수정이 불가능)



한국전자위임주식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52조~제158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165조
- 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5조 1항~2항
- 전자서명법 제3조(2020.12.10 발효)

- 기업은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있으며, 주주들은 자신의 권리 위임 가능
- 위임장 용지에 나타난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조작 불가능
-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혹은 누락 불가능
- 위임장 용지에 필수 기재사항들 모두 포함
- 본인인증만으로도 전자서명의 효력이 있어, 기존 타 업체들의 주주 본인 확인과 관련된 문제점 해소



• 기존의 문제점

- ✓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들이 보통 3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몰리는 경향이 있음
- ✓ 전국적으로 분포된 주주총회 개최지
- ✓ 주주의 자택 일일이 직접 방문으로 위임 권유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 ✓ 위임에 참여하려는 주주들 또한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음
- ✓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기업들의 방역 의무에 대한 부담은 물론 참석해야 하는 주주들에게도 부담

• 스마트 전자위임 시스템 등장

- ✓ 주주총회 개최일이 몰려 있어서 여러 기업의 주식 보유한 주주들은 동시에 참석 불가능한 문제 해소
- ✓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된 주주총회 개최지로 인한 주주들의 참석 문제 해소
- ✓ 위임 권유 절차 간소화, 관련 비용 대폭 절감
- ✓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임 시스템으로, 주주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해주는 동시에 주주 의결 권리를 온전히 보호
- ✓ 기업의 주주총회 성립과 의결정족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주주들도 비대면으로 권리행사



* 부록 : 설립의 법적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2조 - 158조]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① 상장주권(그 상장주권과 관련된 증권에 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그 권유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의결권피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2.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3. 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③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공적 법인만이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위임장 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결권피권유자가 찬반(贊反)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에 나타난 의결권피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①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행위
2.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를 위하여 그 의결권권유자의 비용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하는 행위

②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5. 28.]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의결권권유자는 제152조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 부록 : 설립의 법적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2조 - 158조 / 계속]

제154조(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절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의견표명)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대상이 되는 상장주권의 발행인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56조(정정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정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권유와 관련된 주주총회일 7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이를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7조(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52조에 따른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제155조에 따른 서면 및 제156조에 따른 정정내용을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58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권권유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1. 제1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권유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적 법인이 아닌 자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경우
3.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관하여 제153조 또는 제154조를 위반한 경우
4. 제153조 또는 제156조제1항·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부록 : 설립의 법적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0조 - 165조]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같은 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21. 1. 5.>

1. 의결권권유자가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직접 내어주는 방법
2. 우편 또는 팩스에 의한 방법
3. 전자우편을 통한 방법(의결권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보내는 방법[의결권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그 상장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발행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제16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과 그 임원(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가 10인 미만의 의결권피권유자에게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2. 신탁, 그 밖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게 해당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3. 신문·방송·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를 통하여 법 제1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그 광고내용에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의 명칭, 광고의 이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를 제공하는 장소만을 표시하는 경우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2조제6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는 의결권피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9.>

1.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
2. 의결권권유자 등 의결권을 위임받는 자
3. 의결권피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
4. 위임할 주식 수
5. 주주총회의 각 목적사항과 목적사항별 찬반(贊反) 여부
6. 주주총회 회의시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또는 수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와 위임 내용
7. 위임일자과 위임시간(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일자과 위임시간을 말한다)
8. 위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 부록 : 설립의 법적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0조 - 165조 / 계속]

②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참고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의결권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의결권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그 특별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나. 의결권권유자의 대리인의 성명, 그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의결권권유자 및 그 대리인과 해당 주권상장법인과의 관계

2.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3.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③ 제1항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제2항에 따른 참고서류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8. 27.]

제164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법 제1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제165조(정정요구 등) ① 법 제15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63조제1항제2호의 사항

2. 제163조제2항제1호(가목 중 의결권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의 사항

③ 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재나 표시사항이 불분명하여 의결권피권유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2. 의결권권유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



* 부록 : 설립의 법적 근거
[전자서명법 3조]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감사합니다

T. 1833-3112

F. 031-994-3137

E. wiim@wiim.kr

W. www.wiim.kr



한국전자위임주식회사